



## 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확대 안내

1. 관련: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-1667(2022.4.5.)
2. 위 호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시행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3. 제88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('22. 3. 31.)와 관련하여 코로나19 **국내 치료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입국절차**가 아래와 같이 **변경**되오니, 각 기관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- 가. **(대 상)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(한국으로 출발일 기준)인 장기체류외국인**
  - 나. **(증빙서류)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보서\*** (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)와 **외국인 등록증**(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영주증, 주한공관원신분증도 가능, 붙임 1 참고)
    - \* 격리통보서 등의 확진일을 통해 출발일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 여부 확인
  - 다. **(항공편 탑승) 항공사에서 증빙서류가 확인될 시, PCR음성확인서 없이도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 허용**(붙임 2,3 참고)
  - 라. **(입국 후 조치) 음성확인서 제출자와 동일하게 자가격리 등 조치**
    - **(부적정 서류 제출 시)** '외국인등록증 등을 소지한 외국인은 시설에서 검사 결과 확인 후 자가로 이동(그 외 외국인은 입국불허)
  - 마. **시행 : '22. 4. 11.(월) 입국자부터 적용**
4. 아울러, 예방접종자라도 **국내 입국시 반드시 음성확인서를 소지(음성확인서 제출예외대상 제외)**하여야 함을 재차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장기체류외국인 신분증 등 증빙서류 예시 1부.  
2.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1부(국문).  
3.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1부(영문). 끝.

# 교 육 부 장



각실과, 고등교육기관전체, 고등외국교육기관전체, 소속기관, 소속단체, 시도교육청

주무관

박현식

행정사무관

김미희

코로나19대응 전결 2022.4.6.  
학교상황총괄 신광수  
과장

협조자

시행 **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 ((2022.4.6.))** 접수 ( )  
과-1193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정부세종청사 13-2 / <https://www.moe.go.kr>  
동 교육부 (어진동)

전화 044-203-7140 전송 044-203-7079 / [root77777@korea.kr](mailto:root77777@korea.kr) / 공개